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추가〉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069호, 제2209070호)

2025.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1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II . 검토의견	7
1. 개정안의 주요내용	7
2. 검토의견	10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은희 · 이양수 · 서일준 · 김희정 · 서천호 · 박정하
주진우 · 박충권 · 조승환 · 유상범 · 이성권 · 강승규
최보윤 · 이달희 · 송언석 · 고동진 · 김민전 · 서명옥
배준영 · 조정훈 · 이종욱의원(21인)

2) 제 안 일 : 2025. 3. 19.

3) 회 부 일 : 2025. 3. 20.

※ 의안번호 : 906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정성 · 투명성 확보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비리 논란, 선거관리 부실, 허위평가 등 방만한 조직운영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내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전수

점검 결과를 보면, 면접점수·평가표 조작, 짬짬이 내부위원 채점 등 채용규정 위반이 무려 878건에 이를 정도로 채용비리 온상으로 밝혀지며 구직중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독을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내부 자정작용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불거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의 핵심 또한 전 사무총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감시 사각지대에서 사무처 병폐가 확산됐음.

현재 선관위 내에서 동일한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만큼, 사무총장 또한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제65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9070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07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
야 할 것임.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조은희 · 이양수 · 서일준 · 김희정 · 서천호 · 박정하
주진우 · 박충권 · 조승환 · 이성권 · 유상범 · 강승규
최보윤 · 이달희 · 송언석 · 고동진 · 김민전 · 서명옥
배준영 · 조정훈 · 이종욱 · 이만희 의원(22인)

2) 제 안 일 : 2025. 3. 19.

3) 회 부 일 : 2025. 3. 20.

※ 의안번호 : 907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비리 논란, 선거관리 부실, 허위평가 등 방만한 조직운영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내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전수 점검 결과를 보면, 면접점수·평가표 조작, 짬짬이 내부위원 채점 등 채용규정 위반이 무려 878건에 이를 정도로 채용비리 온상으로 밝혀

지며 구직 중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독을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내부 자정작용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불거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의 핵심 또한 전 사무총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감시 사각지대에서 사무처 병폐가 확산됐음.

현재 선관위 내에서 동일한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만큼, 사무총장 또한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69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 3. (생략) <신설> ③ ~ ⑥ (생략)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1. ----- -----

현행	개정안
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u>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u>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생략)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략)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u>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u>대통령·대통령</u>	----- ----- ----- ----- ----- -----<u>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u>----- -----. 2. (현행과 같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u>----- ----- ----- ----- ----- ----- -----<u>대통령·대통령당선</u>

현행	개정안
<u>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u> ④ (생략)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생략) ②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u>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u>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u>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u>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u>-----. ----- ----- ----- -----<u>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u>----- -----.

2. 검토의견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7인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4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선거·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기구(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사무

처의 장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장관급1))에 해당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예산 등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장관급이고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추가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수성, 사무총장의 위상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첫째,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경우 사무기구의 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도 위원장만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무위원급(장관급)임.

2) 동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4항도 함께 개정하여 법정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체계·자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표-3] 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에 대한 임명 절차

구 분	기관명	사무기구의 장 임명 절차	국회 인사청문 대상
헌법 기관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	-
	법원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독립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행정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임용	금융위원회위원장

둘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³⁾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근거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외에 개별법에도 두어야 하므로,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3호)」의 심사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미치는 영

3)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향, 인사청문 일정의 지체될 경우 선거관리 업무 공백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17

도입 시기	법적근거	대 상 자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제16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지명)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국무위원(대통령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지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